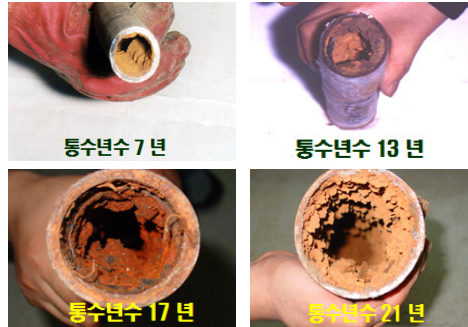


깨끗한 수돗물, 녹슨 관의 체계적인 교체부터

녹슨 옥내급수관은 녹물출수, 통수능 부족, 누수 등으로 수돗물 불신 초래

- '94년 이전 건축된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은 녹과 스케일 형성이 빠른 아연도강관이 많이 사용되어 녹물출수 등의 문제 심각
 - 아연도강관은 관내에 스케일 발생이 많아 통수능이 저하되고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결점이 있어 건설교통부 고시 (제1993-350호)에 의해 '94.4.1일 이후 건축물 내 사용 금지
 - '03년 말 기준 전국 아파트 526만호 중 53% 정도가 옥내급수관으로 아연도강관 사용(환경부, 2007)
 - 서울시의 설문조사('03년) 결과,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된 아파트 중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63%가 녹물출수 경험

아연도강관의 통수 년수별 내부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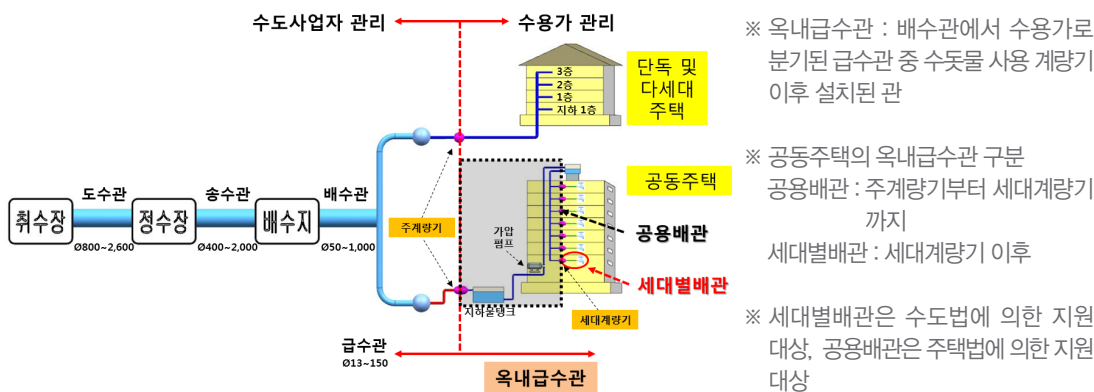
자료 : 환경부(2005), 수돗물수질개선 종합대책 보도참고 자료

'94년 이전 건축된 노후주택 중 아연도강관이 사용된 옥내급수관은 녹물출수, 통수능 부족, 누수 등 문제가 심각

옥내급수관의 관리책임은 수용가에 있으나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'05년 환경부는 「수도법」 개정을 통해 옥내급수관 관리에 수도사업자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

- 옥내급수관의 노후화로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갱생 또는 교체 권고가능
 -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나 융자도 가능
 - '14년 현재 서울·대전·대구 등 특·광역시와 경기도의 19개 시·군에서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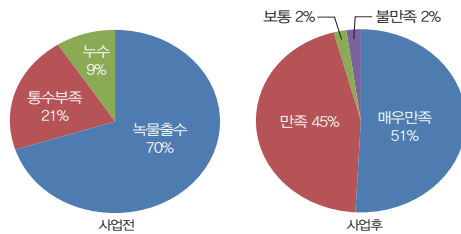
수돗물 공급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 범위 및 옥내급수관의 구분형태



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현황

'07년 서울시 사업을 기점으로 대구 및 대전시와 경기도의 19개 시·군에서 시행

- 서울시는 '아리수 고급화 사업'의 일환으로 옥내급수관의 관리와 개량지원 사업 시작
 - '07년 시범사업 결과 주민만족도 96% 달성
 - 아연도강관은 무조건 지원대상, 교체 및 갱생 공사비 각각 50%, 80%지원
 -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배관 뿐 아니라 공용배관까지 지원 확대하고, 표준지원 공사비 적용기준을 작성하여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
- 서울시 옥내급수관 갱생 시범사업 전·후 주민의견
 - 사업전: 녹물출수 70%, 통수부족 21%, 누수 9%
 - 사업후: 매우만족 51%, 만족 45%, 보통 2%, 불만족 2%



자료 : 정규연 외(2008), 옥내급수관 갱생에 따른 수돗물 수질 및 출수량 개선에 관한 연구, 대한환경공학회

법의 이원화, 수용가 부담 및 관심 부족으로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효과 저조. 통합조례 제정 및 중장기 계획과 대규모 홍보전략 수립 필요

- 대구 및 대전광역시는 저소득층 및 학교,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'08년과 '10년부터 교체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,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만 지원(공동주택의 공용배관 제외)
- 경기도는 주택조례 및 수도급수조례에 준하여 19개 지자체가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을 교체지원 중
 - 9개 시·군이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중, 12개 시·군이 주택조례를 근거로 공용배관을 교체 지원하고 있으며, 비내식성관에서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

경기도의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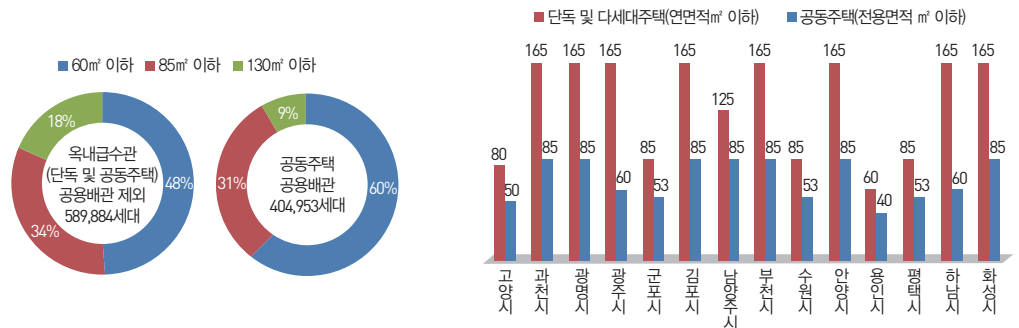
법(주택법, 수도법)의 이원화로,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세대별배관이 구분되어 개량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효과 반감

-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은 녹물출수 및 통수능 부족, 누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계량기 이후의 시설물에 대한 종합개선 필요
 - 서울시의 경우 세대별배관뿐 아니라 공용배관까지 확대 지원하는 반면, 경기도는 성남시와 군포시만 주택조례와 수도급수조례상에서 동시 지원 가능

지자체별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이 상이하여 사업추진 시 차등지원에 따른 불만 초래

- 경기도는 지자체 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공사비용이 천차만별, 도(道)의 일관된 지원 한계
 - 경기도 내 '94년 이전에 건설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59만 세대, 상당수가 아연도강관으로 상수도관이 시공되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발생
 - 지자체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원 면적이 200%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, 지원공사비도 50~15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도민들에게 지원비용을 일관되게 지원하는데 한계

■ 경기도 내 '94년 이전 건축된 주택의 옥내 급수관 현황 ■ 경기도 내 시·군 급수조례의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대상



자료 : 법제처, 2010년 주택총조사(재개발,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포함되었거나 기 지원한 건축물 제외)

녹물출수가 우려되는 아연도강관이더라도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에 한해서 교체지원이 가능하며, 수용가 비용부담과 관심부족 등으로 신청률 저조

- 지원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며, 교체 시 가구당 20~200만 원의 본인부담액 발생, 전·월세 등 임차인 가구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 및 비용부담 필요 및 사업거부 또는 관심부족 등으로 신청률 저조
 -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들은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더라도 녹물이 출수되지 않는 경우,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 신청률 저조

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을 위한 경기도 추진방안

사업 추진 효율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경기도 통합조례 제정 및 조직개편

- 주택조례와 수도급수조례의 통합조례 제정으로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증대시키고, 지자체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팔당본부 내 전담 사업팀 구성

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사업 추진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·장기 계획 및 홍보전략 수립

- 사업 추진 시 행정 및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 추진